

02

통합방송법의 OTT 법적 쟁점과 과제

최진웅 국회의원법조사처 입법조사관



I. 들어가며

2019년 1월 11일 OTT를 방송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2016년 6월 17일 현행 「방송법」과는 별도의 방송 관계 법률(「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로 규제해온 IPTV를 「방송법」 체계 내에 통합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경우에는 방송 관련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OTT 서비스까지도 「방송법」 체계 내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방송과는 상이한 규제 대상이 되어온 OTT 서비스에 대해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법」의 적용을 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글에서는 OTT에 대한 현행 국내법상 규제, OTT 규제와 관련된 해외 사례, 「방송법」 개정안 중 OTT와 관련된 주요 내용의 소개, 개정안에 대한 주요 쟁점 사안과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OTT에 대한 현행 규제

현행법상 OTT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 관련법이 아닌 인터넷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받고 있다. OTT와 관련된 법률은 플랫폼 규제와 콘텐츠 규제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는데, 주요 법률을 소개하면 <표 1>과 같다.

먼저 OTT 플랫폼은 개별법상 법적 지위에 따라 상이한 사업자 규제를 받고 있다. 주요 법률을 소개하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OTT 플랫폼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 절차만 이행하면 누구나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인터넷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도 지고 있다. OTT 플랫폼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불법 저작권 침해 신고 시 이에 대한 삭제 조치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OTT 콘텐츠도 개별법상 규제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근거하여 불법·유해 정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료로 유통되는 VOD 콘텐츠의 경우 사전 등급 심의의 대상이 된다.

〈표 1〉 방송과 OTT에 대한 주요 법률 체계

구분	방송	OTT
플랫폼 규제	· 방송법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저작권법
콘텐츠 규제	· 방송법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Ⅲ. 「방송법」 개정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159)의 주요 내용

2019년 1월 11일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중 OTT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의 범주를 확대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 전기통신설비에 따라 송신”(제2조제1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서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기획·편성 또는 제작”이란 문구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OTT와 같이 콘텐츠를 직접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지 않고 단지 매개하는 경우에도 방송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방송사업자의 범주를 OTT 플랫폼 및 콘텐츠 사업자로 확대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서 방송사업자의 범주에는 OTT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개정안에서는 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새롭게 분류하면서(제2조제4호), OTT 플랫폼 사업자는 유료방송사업자로, OTT 콘텐츠 사업자는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에 포함하고 있다(〈표 2〉참고).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국, 유무선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 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그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료로 유무선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플랫폼은 유료방송사업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유료방송사업자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와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되는데,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란 케이블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로서 기존 방송 관련 사업자가 해당되고, OTT 플랫폼 사업자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포함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를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거나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제11조제3항에 따라 송

인 또는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제2조제7호나목), 동 조항 중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판매·제공”하는 경우가 OTT의 범주에 포함된다.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해당하는 OTT 중에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록 의무가 있으나,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절차만 이행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제11조제3항).

다음으로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방송사업자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콘텐츠 제작자는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되는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기존 PP(Program Provider)를 의미하며, OTT 콘텐츠 제작자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에 해당된다.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란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판매·제공하는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창작영상물을 활용한 콘텐츠를 공급·판매할 목적으로 제11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제2조제8호 나목)로서 OTT 콘텐츠를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유료 OTT 플랫폼 등의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한다면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자는 타 사업자 보다는 낮은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데, 신고 의무를 이행하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제6항).

〈표 2〉 기존 방송 관계법 및 개정안에서의 방송사업자 분류 비교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법 개정안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성방송사업자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 방송제공사업자	부가유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IPTV방송콘텐츠사업자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자	

셋째,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유료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갖는 OTT 서비스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책임 및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주요 법적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시청자 권익증진 의무(제3조), 방송의 공적 책임 의무(제5조), 방송심의기준 준수 의무(제8조), 사업자 진입규제(제11조), 사업자 결격사유(제17조), 방송광고 규제(제33조), 방송광고 매출 현황 자료 제출 의무(제34조),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또는 인가(제41조),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보존 의무(제47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자료 제출(제51조), 자체심의(제58조), 자료 제출(제85조), 재산상황의 공표의무(제86조) 등이 있다.

IV. 해외 사례

(1) 미국

미국의 「연방통신법(Communication Act)」은 지상파방송, 유료방송(MVPPD), 통신을 별도로 규정한 수직적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OTT의 경우 통신서비스 중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s)가 아닌 정보서비스사업자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 외에는 별다른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¹⁾

2014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MVPPD의 정의를 확장하여 다채널 실시간 동영상을 가입자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서비스를 MVPPD에 포함함으로써 실시간 유료 OTT도 방송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였지만, 실제 최종 규제 여부는 FCC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²⁾ 요약하면 미국의 경우 편성계획에 따라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에 대해서는 방송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VOD 같은 비실시간 OTT 서비스는 여전히 방송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1) 최진웅 (2015).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쟁점과 개선 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287호.

2) David Oxenford and David O'Connor (2019, 2, 15). A Broadcaster's Guide To Washington Issues, 「TVNewsCheck」, <<https://tvnewscheck.com/article/230357/broadcasters-guide-washington-issues/>>.

(2) EU

EU는 방송과 통신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원칙하에 수평적 규제를 하고 있는데,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에 따르면 편성계획에 따른 실시간 OTT 서비스는 방송규제의 대상이 되지만, VOD 같은 비실시간 OTT 서비스는 방송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³⁾ 2016년에는 동 지침을 개정하여 유튜브와 같은 이용자제작콘텐츠를 유통하는 OTT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였는데, 주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제작콘텐츠를 유통하는 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VSP) 개념을 신설하였으며, VSP에게 미성년자의 보호, 성별·인종·종교·국적 등의 이유로 폭력과 증오를 유발하는 콘텐츠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⁴⁾ 이러한 개정이 갖는 의미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대한 규제 대상이 기존 TV, 유료방송 및 인터넷 VOD 등과 같이 콘텐츠에 대해 직접 편집권을 행사하는 동영상 서비스에 더해, 개방형 동영상 플랫폼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며, 다만 VOD나 동영상플랫폼서비스의 경우 내용 규제를 제외한 진입규제, 소유규제, 광고규제 등의 기타 규제에서는 낮은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⁵⁾ 요약하면 EU의 경우 편성계획에 따라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의 경우 방송 규제의 대상이 되지만, VOD·이용자제작동영상을 유통하는 비실시간 OTT의 경우에는 방송과 상이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⁶⁾

(3) 일본

일본은 2010년에 방송과 통신에 대하여 수평적 규제를 도입하는 대신에 방송 관련법(「방송법」, 「유선라디오방송법」,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통합하는 선에서 입법을 마무리함으로써 현재까지는 수직적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⁷⁾ 통합 방송법에서는 OTT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OTT 서비스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규제하고 있어, 방송 규제보다는 완화된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⁸⁾

3) 앞의 최진웅 (2015).

4) 황준호·김태오 (2016).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5) 앞의 황준호·김태오 (2016).

6) 최진웅 (2018).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입에 따른 쟁점과 과제. (NARS 현안분석), 제43호.

7) 앞의 최진웅 (2015).

8) 앞의 최진웅 (2015).



V. OTT 관련 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과제

(1) 방송과 OTT에 대한 동일 규제

방송 서비스와 OTT 서비스를 동일한 서비스로 보고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기획·편성 또는 제작”을 방송의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비실시간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의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다.⁹⁾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기획·편성 또는 제작”이란 방송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실시간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실시간 서비스도 방송의 범주로 포함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방송콘텐츠의 경우 표현물이 공중에 동시에 전달되고(실시간의 특성), 이로 인해 수신자의 선택권이 현저히 제한되는 특성이 있는 데 반해, OTT와 같은 인터넷 콘텐츠는 비실시간 서비스에 기인하여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과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¹⁰⁾

다음으로 방송에 대한 범주를 넓혀 전통적인 방송과 OTT를 동일한 방송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케이블이 약 1,433만(단자), IPTV가 약 1,404만(단자), 위성방송이 약 325만(단자)이며,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은 약 16조5,122억 원에 이르고 있

9) 이향선 외 (201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콘텐츠 규제 체계 정비 방안: 유사방송 및 기타 융합형 시청각 콘텐츠 규제 체계 정립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 오픈넷 (2019).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8159) 의견서.

다.¹¹⁾ 반면 OTT의 경우 가입자 수나 매출액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방송 산업과 경쟁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면, 방송과 OTT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경우 국내 OTT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OTT 활성화를 위해 진입, 소유·겸영, 다양성, 편성, 광고규제 등 방송 규제의 적용을 최소화하거나,¹²⁾ 또는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OTT 규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³⁾

(2)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하여 방송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원칙적으로는 방송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유료로 판매하거나(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해당),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인터넷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에 해당), 방송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개인방송만을 유통하는 플랫폼이나,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경우에는 방송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규제 방안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방송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사전 제작,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심의, 그리고 방영의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제작되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사전 심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경로를 밟고 있다. 따라서 방송과 인터넷 개인방송 간에 차별적 속성을 고려하면 방송 규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이나 콘텐츠는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방송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¹⁴⁾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이 방송 프로그램을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판매하는 플랫폼이 방송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도 방송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2018), 201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12) 이종관 (2019, 1월),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 토론문>,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 통합방송법안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 의원회관.

13) 임재주 (2019),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한국방송공사법안 검토보고서.

14) 앞의 이종관 (2019, 1월).



(3)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동일한 OTT 콘텐츠를 제공함에도 OTT 플랫폼에 대한 방송 규제가 달리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이한 규제 방식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유료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OTT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간주하여 방송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무료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OTT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방송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OTT에 대한 주 수익원이 이용자의 대가보다는 광고의 판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방송프로그램 및 채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용자 가입 기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¹⁵⁾

또한 개정안은 방송프로그램을 유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OTT 플랫폼을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서 규제하고 있으므로, 주된 규제의 대상은 방송프로그램을 이차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기존 방송사업자의 OTT 플랫폼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방송 프로그

¹⁵⁾ 최세경 (2019, 1월). <OTT사업자 및 인터넷방송콘텐츠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쟁점>.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 통합 방송법안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 의원회관.

램에 의존하지 않는 다른 OTT 플랫폼은 방송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방송사의 OTT와 비방송사의 OTT 플랫폼 간에 차별적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방송프로그램과 인터넷 콘텐츠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료 OTT 서비스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를 부가유료 방송사업자로 간주하여 방송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규제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안에서는 유료 OTT 플랫폼과 같은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판매한다면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간주해 방송 규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제공자의 특성이 아닌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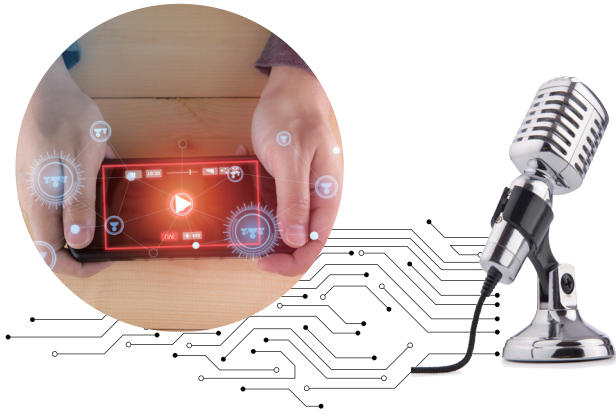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자가 수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부가유료방송사업자 외에도 일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 콘텐츠를 공급할 경우에도 콘텐츠 제작자가 방송 규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이것이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부가유료방송서비스가 아닌 OTT가 부가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OTT 콘텐츠 제작자도 방송 규제의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¹⁷⁾ 이러한 규제 방안이 합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국내 OTT와 해외 OTT 간 역차별 문제

역외 OTT 서비스에 대해서 실효적 규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안에 근거하면 OTT 플랫폼 및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방송 규제의 적용은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문제는 국내 사업자와 달리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진입규제의 준수를 강제할

16) 오픈넷 (2019),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8159) 의견서.

17) 손지원 (2019, 1월), <OTT에 대한 방송 규제, 필요한가>,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 통합방송법안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 의원회관.



수 있는지다. 예를 들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경우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넷플릭스가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현행 규제 수준보다 높은 국내의 방송 규제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실효적인 역외 규제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주된 방송 규제 적용의 대상은 국내 OTT 사업자가 될 것이며, 이 경우 경쟁 관계에 있는 해외 OTT 사업자와 비교하여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VI. 나가며

그간 방송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에 대해서는 방송 관련 법률에 포함하여 규제하는 제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 외에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도 방송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OTT와 전통적인 방송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OTT 서비스를 기존 방송 매체의 범주에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규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방송과 OTT에 대한 수평적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외의 규제 사례 및

기존 방송 플랫폼 및 콘텐츠와 차별되는 OTT 플랫폼 및 콘텐츠 특징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OTT 서비스에 대해 방송 규제를 적용할 경우 방송과 OTT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OTT 서비스와 해외 OTT 서비스 간에 역차별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2018). 201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2) 손지원 (2019, 1월). <OTT에 대한 방송 규제, 필요한가>.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 통합방송법안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 의원회관.
- 3) 오픈넷 (2019).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8159) 의견서.
- 4) 이원우 (2005). <현행법상 방송 및 통신시장의 규제와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인터넷방송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1권.
- 5) 이향관 (2019, 1월).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 토론문>.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 통합방송법안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 의원회관.
- 6) 이향선 외 (201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콘텐츠 규제 체계 정비 방안: 유사방송 및 기타 융합형 시청각 콘텐츠 규제 체계 정립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7) 임재주 (2019).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한국방송공사법안 검토보고서.
- 8) 최세경 (2019, 1월). <OTT사업자 및 인터넷방송콘텐츠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쟁점>.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 통합방송법안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 의원회관.
- 9) 최진웅 (2015).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쟁점과 개선 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287호.
- 10) 최진웅 (2018).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입에 따른 쟁점과 과제. <NARS 현안분석>, 제43호.
- 11) 황준호·김태오 (2016).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